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3101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4. 2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6. 4. 24.

다. 상정·의결일자: 2026. 5. 7.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가. 제정이유

-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성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2)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안 제4조)
- 3) 민생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안 제5조 및 안 제6조)
- 4)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나)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라)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예산조치: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16228(2026. 4. 9.)호]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780호

- 예고기간: 2026. 4. 2. ~ 2026. 4. 22.(20일간)
- 예고결과: 의견 제출 1건

| 입법 예고안 | 수정안(검토의견) | 검토결과 |
|--|---|--|
| <p>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p>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p> <p>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신 설></p> <p><신 설></p> | <p>제6조(지급대상) ----- ----- ----- --.</p> <p>1. ----- -----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p> <p>2. ----- ----- 결혼이민자로서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p> <p>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p> <p>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 <p><input type="checkbox"/> 의견 반영</p> <p>-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 명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민생지원금 사업 추진 시 업무의 명료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p> |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비용추계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호철)

가. 검토의견

1) 입법 필요성 및 정책 타당성

-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민생활력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군민 생활 안정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수단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중심 지급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정책적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2) 법적 타당성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3)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사항

- 민생지원금 지급은 그 성격상 사회보장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단년도 사업은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 것으로 판단됨.

4) 선거 시기 관련 검토

- 민생지원금 지급이 선거 시기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이 명확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행정 집행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은 인정됨.
-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집행 시기의 적정성 확보, 홍보 방식의 중립성 유지, 대상자 선정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정치적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함.

5) 재정 운영 관련 검토

-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지원금 지급 규모, 대상 범위,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단년도 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선거 시기와 관련한 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5. 7.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